

재개발사업 절차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10:41



• 위 그림은 조합시행의 경우와 조합 외 시행의 경우 2가지로 나뉜다.

• 사업절차

1. 계획수립(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작
3. 분양절차를 거침
4.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음.
5. 철거, 착공 시작
6.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인가되면 1)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을 완료.
 - 1) 이전고시 :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 소유권 취득,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청산금의 지급 등.

1. 계획수립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2. 정비구역 지정

2. 사업시행계획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2. 창립총회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시행계획인가
	5. 이주대책
3. 분양 및 관리처분	1. 분양공고 및 신청
	2. 관리처분계획인가
	3. 철거 및 착공
4. 사업완료	1. 준공인가
	2. 이전고시
	3. 청산
	4. 조합해산